

장 소

원고 1. 오 의 균

2. 김 선 응

3. 박 정 숙

위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원순, 이 찬진  
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의 1 성재빌딩 6층

피고 대한민국

법률상 대표자

법무부장관 김 두 희

손해배상(기)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3,5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일  
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셈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서원합동법률사무소

변호사 박인제 · 이오영 · 김진국 · 이원재 · 이찬진

서울 · 서초구 서초동 1656-1(성재빌딩 6층) 대표 · 대표전화: 525-3660 · 팩스: 525-3663

... 손해배상책임을 구합니다.

라는 편집 및 가진 행선고를 구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#### 1. 원고의 지위

원고 오의균은 소외 동양증권(주)에 1992. 12. 경 입사하였고, 원고 김선웅은 소외 (주) 제일기획에 91. 12. 1.에 입사하였으며, 원고 박정숙은 (주) 한겨레신문에 90. 12. 3.에 입사하였는바, 위 각 회사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전단 소정의 당연직용사업장에 해당되어 원고들은 각기 사업장가입자로서 매월 돈 26,000원, 17,400원, 15,000원 상당을 기여금 및 퇴직금 전환금을 포함하는 각출로조로 소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리 및 위탁하고 있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납부하여 왔습니다.

#### 2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##### 가.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위

(1) 국민연금법 제1조에서는 국민의 노령,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법률의 목적으로 정하면서, 같은법 제2조에서는 국민연금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며, 보사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가입자에 대한 관리, 각출료 징수, 급여결정, 지급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를 위탁하게 하며(법제22,23조), 한편 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

### 서원합동법률사무소

변호사 박인제 · 이오영 · 김진국 · 이원재 · 이찬진

서울 · 서초구 서초동 1656-11 성재빌딩 6층 대표 · 대표전화: 525-3660 · 팩스: 525-3663

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밖에 의한 유익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로 국민연금기금을 선지, 직접 이를 관리, 운영하되 그 운영 방식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제1호 내지 제6호 소정의 방법으로 그 수익이 대통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.(법 제82조 제1항, 83조) 따라서 보건사회부장관에 취임한 소외 서상목 등 원고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본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보건사회부장관을 역임한 소외인들은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, 운영하는 지위에 있으며, 피고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자신의 소속 행정기관장인 소외인들을 관장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습니다.

- (2) 이상과 같은 점에서 소외 서상목등 현임 및 전임 보사부장관인 소외인들은 원고들 등 모든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동인들이 각출하여 형성된 국민연금기금을 가입자들에게 최대한 수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를 운영, 관리하여야 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같은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인들의 원고등에 대한 관계는 법률에 의하여 위와같은 업무를 위탁받은 수임인으로서 그 의무는 민법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준하는 엄격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그 감독자로서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.

#### 나.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

##### (1) 기금의 형성

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각출료와 이를 운용하여 얻은 수익금,

## 서원합동법률사무소

변호사 박인제 · 이오영 · 김진국 · 이원재 · 이찬진

서울 · 서초구 서초동 165-1 성재빌딩 6층 대표 · 대표전화 : 525-3660 · 팩스 : 525-3663

직원과 특히 미미한 부분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수익자금운용상  
의 임기규제로 조성되는바(법 제82조 제2항). 결국 국민연금은 그 공공적  
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관철되어 그 수익자  
인 가입자들이 거의 100%에 가까운 비율로 기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

## (2) 수익율

법 제83조 제3항 및 이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기금  
의 운용수익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고  
규정하고 있습니다.

## (3) 현 실태

그럼에도 1994. 8. 10. 발행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간의 "1993년 국민연  
금통계연보"에 게재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은 별표  
제1과 같은 바, 93년 말 기준으로 총기금 8조 4246억원 상당중 본래의 수  
익사업에 해당되는 금융부분 운용액은 4조 1418억원 상당임에 비하여 공  
공부문은 3조 800억원, 복지부문은 3900억원 등으로 45%이상의 금액이 투자  
재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월선 하회하는 낮은 수익율 얻는 공공부문에 투자  
되고 있습니다.

뿐만 아니라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율 현황은 별  
표 2와 같은 바, 93년도 기준 금융부문의 수익율 평균은 14.63%임에 반하  
여 공공부문은 9.79%에 불과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93년도의 1  
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 약 11%의 이자율에도 월선 하회하는 것을 확  
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운용으로 말미암아 93년도 한해만 하여도

## 서원합동법률사무소

변호사 박인제 · 이오영 · 김진국 · 이원재 · 이찬진

서울 · 서초구 서초동 1656-1 성재빌딩 6층 대표 · 대표전화 : 525-3660 · 팩스 : 525-3663

공공부문의 금융부문에 대한 상대적인 수익률 차이로 무려 1058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.(별표 3 참조)

더구나 이러한 것은 금융부문 중에서 회사채나 금전신탁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훨씬 더 막대한 수익손실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.(별표2 참조)

이로인한 과도한 공공부문에 대한 저리의 기금운용으로 말미암아 기금조성 후 93년도까지 무려 2300억원 상당의 수익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,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상 정부인 피고2가 이를 무한히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률상 국가재정에 의하여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므로 이와같은 법령에 위배된 방만한 운영은 결국 원고 등 연금가입자들에게 장차 연금 급여의 지급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으며, 정부투자기관의 하나인 한국개발연구원(KDI)의 연구보고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도 2020년 이후에는 적자 및 재정파탄이 명확하다고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.

이와같은 기금의 파행적인 운용은 보건사회부장관인 소외인들뿐 아니라 위 기금을 임의로 예산에 무단전용하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.

#### 다.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

따라서 피고는 위 기금의 관리, 운용책임자인 보사부장관들의 이상과 같은 국민연금기금의 정부예산 편성 및 재정자금 전용 등 불법 전용행위를 조장 및 방관하고, 원고 등 가입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이를 운영하여야 할 법률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앞서 본 바와같은 위 기금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 직무집행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기금 수익상의 손실에 대하여 소속 공

### 서원합동법률사무소

변호사 박인재 · 이오영 · 김진국 · 이원재 · 이찬진

서울 · 서초구 서초동 1656-11(성재빌딩 6층) 대표 · 대표전화 : 525-3660 · 팩스 : 525-3663

무원인 동인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위 기금을 전용함으로써 그 손해를 미친 잘못으로 인한 위 기금수의 손실의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겠습니다.  
따라서 소외인들은 원고 등이 조성한 위 기금에 대한 법률상의 관리의무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금을 전용함으로써 원고 등 가입자 등에게 앞서 본 금액 상당의 운영상의 손실 및 장차 도래할 기금 파탄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고, 피고는 위 소외인들의 감독책임자 의 지위 및 자신의 불법 전용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연금가입자인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원고들의 장차 연금 급여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등을 초래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고 하겠습니다. 그 손해액은 수후 즉정 키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일용 돈 3,500,000원을 청구키로 하겠습니다.

### 3. 결 론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기 위 돈 3,500,000원 및 이에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솟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셈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고 저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## 서원합동법률사무소

변호사 박인재 · 이오영 · 김진국 · 이원재 · 이찬진

서울 · 서초구 서초동 1656-1 성재빌딩 6층 대표 · 대표전화 : 525-3660 · 팩스 : 525-3663

1. 강제1호증의 1, 2 1993년도 국민연금부과연보 표지 및 내용
1. 기타 번문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.

### 첨 부 서 류

- |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|
| 1. 위 입증방법 | 각 1통 |
| 1. 소장부본   | 1통   |
| 1. 위임장    | 1통   |

1994. 12. 5.

위 원고를 소송대리인

변호사 박 원 순

변호사 이 찬 진

서울민사지방법원 귀증.

### 서원합동법률사무소

변호사 박인제 · 이오영 · 김진국 · 이원재 · 이찬진

서울 · 서초구 서초동 1656-1 (성재빌딩 6층) 대표 · 대표전화 : 525-3660 · 팩스 : 525-3663